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863 발의연월일: 2022. 3. 4.

발 의 자 : 이상헌ㆍ이병훈ㆍ양이원영

한병도 • 유정주 • 송재호

이동주・김교흥・양정숙

안민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TT(Over The Top) 시장의 확대에 따라 온라인비디오물 유통 주기의 축소, 등급분류 대상 비디오물의 증가(2021년 12월 기준 전년 대비 2배 증가) 등 영상콘텐츠 산업계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현행법상 국내에 비디오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등급분류를 거쳐야 하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축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업계 진흥과 관련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OTT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청소년 보호라는 등급분류의 취지도 양립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자체등급분류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 신설 등).

법률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제19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제50조제2항 중 "제1항"을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으로, "자는"을 "자가"로,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신청"을 "갖추었음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단,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

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5년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지정할 수 있다.
 -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의 적정성
 - 2. 온라인비디오물산업 발전 및 건전한 영상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기통신 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인
 - 2.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 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정성
- 2.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의 적절성
- 3. 최근 3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 ⑤ 제1항의 지정 및 제4항의 재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조제2항 에 따라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3.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에 따를 것
-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 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 분류사업자가 유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 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분류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0 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0조의4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4.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2호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시정 방안을 정하여 10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자 체등급분류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 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결정

- 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 다.
-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 2.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신속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 스템 구축 및 운영
 -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사후관 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체 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 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의4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및 제50조의7제4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 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 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제50조제1항"을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 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5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급의 온라인비디오 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이 시청 지도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6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70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⑧ 제7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⑨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경우
-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 출을 지연하는 경우

제72조제2호 중 "제작·유통"을 "제작"으로, "관리"를 "등급분류에 따른 유통 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50조의4제1호와 제2호의 준수 확인 등 자체등급분류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제79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2조제2호에 규정에 의한"을 "제7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으로, "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90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제91조제4호 중 "제92조제2항"을 "제92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9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벌칙) 제70조제7항에 따른 문화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신 설> 비디오물로서 정보통신망(제1 9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 한다)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 공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13. ~ 23. (생략) 13. ~ 23. (현행과 같음) 제50조(등급분류) ① (생 략) 제50조(등급분류) ① (현행과 같 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는 그 비디오물의 제작 또는 배급 ----- <u>갖추었음</u> 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을 확인-----등급분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 <단서 신설> 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 또 는 수입된 비디오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에 관한 사항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③ ~ ⑦ (생 략) <신 설> 아니하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자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보류를 할 수 있다. 단,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1 항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하여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 을 공급하는 자가 그 비디오물 의 제작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 한 권리를 갖추었음을 확인하여 야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전자적 방법으로 정당한 권 원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자체 등급분류 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상물등급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요청하여 그 결과로 자체등급분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
- 제50조의3(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①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은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를 할 수 있는 사업자로 5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 1.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계획

 의 적정성
 - 2. 온라인비디오물산업 발전 및건전한 영상문화 조성에 대한기여 계획의 적정성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있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같다.
 - 1.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 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전 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법

인

- 2.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이 거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 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 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 ③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 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자체 등급분류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을 할 수 있다.
- 1. 제1항 각 호의 계획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향후 계획의 적

 정성
- 2.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의 적절성
- 3. 최근 3년간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확정된사실이 없을 것
- ⑤ 제1항의 지정 및 제4항의 재 지정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절차 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u><신</u> 설>

정한다.

- 제50조의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 1. 제50조제5항에 따른 비디오 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자 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 2. 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한 온 라인비디오물에 대하여 제65 조제2항에 따라 등급과 내용 정보 등을 표시하고 이를 영 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할 것
 - 3.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해당 등급분류책임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실 시하는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 한 교육을 받을 것
 - 4. 자체등급분류 업무와 관련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자료요청 에 따를 것
 - 5. 그 밖에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 설>

<신 설>

준수할 것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 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 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 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 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 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한 등급 분류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제50조의6(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등) ①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은 자체등급분류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제50조의2제1항에 따 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50조의4제1호에서 제5호까 지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3. 제50조의7제4항에 따른 조치 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4.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계속한 경우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제2호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 지 명령에 앞서 자체등급분류사 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10 일 이내에 이를 수락할 것을 권 고할 수 있으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시정방안에 따른 조치 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취 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는 경우에는 「행 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지정취소이전에 한 등급분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취소

<신 설>

<u>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u> <u>다.</u>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필요한 절차와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 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 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 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 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 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 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 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 가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 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

<신 설>

소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 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 보하여야 한다.

-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 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 는 자체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 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 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 2.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신속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
 영
 -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 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 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

축 및 운영

-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 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 한 등급분류 업무 지원
- 6.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 7. 자체등급분류 정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협력체계 구축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 등급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자체등급분류지원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50조 의4제2호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④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 급분류 업무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50조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 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 여(이하 "유통"이라 한다)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u>제50조제1항</u>의 규정을 위반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
- 2. (생략)
- 3. <u>제52조제1항</u>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 또는 확인이 취소된 해당 비디오물
- 4. 제5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 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배 급한 비디오물
- 5. (생략)
- ②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 디오물을 제50조제3항의 규정

의4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및	<u>-</u>
제50조의7제4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를 자체등	
급분류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	_
를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53조(불법비디오물의 판매 등의	
금지) ①	-
	-
	-
1.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
	-
<u>제1항</u>	-
	-
	-
	-
<u>제1항</u> 2. (현행과 같음)	-
제1항 2. (현행과 같음) 3. <u>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u>	-
제1항 2. (현행과 같음) 3. <u>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52조</u>	-
제1항	-

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 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표시하여야한다. <<u>수단 신</u>설>

② (생략)

다만, 제50조제3항제2호 및 제3
호에 해당하는 등급의 온라인비
디오물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권
자 등 법정대리인이 시청 지도
를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현행과 같음)
제65조(표시의무) ①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등급과 내용정보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폐쇄 및 수거)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신 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 인비디오물이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 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 의 게시판을 관리 · 운영하는 자 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ㆍ정 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시 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 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영 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⑨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 항에 따른 시정권고나 시정명령 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 제72조(직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 결한다.

- 1. (생략)
- 2. 영상물등의 <u>제작·유통</u> 또는 | 2. ----- <u>제작</u>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 에 관한 사항

<신 설>

3. ~ 5. (생 략) <신 설>

<u><신</u>설>

6. (생략)

지 아니하다.

-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 하여 긴급한 경우
- 2.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 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 3. 명백한 의사로 의견제출을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을 지연하는 경우

- 1. (현행과 같음)

분류에 따른 유통 관리----

- 2의2. 제50조의4제1호와 제2호 의 준수 확인 등 자체등급분 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3. ~ 5. (현행과 같음)
-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온라 인비디오물 이용자 교육에 관 한 사항
- 6. 온라인비디오물 이용자의 권 익 보호에 관한 사항
-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영상물등 급위원회는 제7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소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구성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u>제72조</u> <u>제2호에 규정에 의한</u>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후관리위원회를 <u>두되, 사후관리위원회는 7인</u>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제90조(수수료)

-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 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u><</u> 후단
<u>삭제></u>
② <u>제72조제</u>
<u>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u>
<u>둔다</u> .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생략) <신 설>

5. ~ 7. (생략)

- 제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제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 132조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 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 ~ 3. (생 략)
 - 4.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4. 제92조제2항 및 제3항-----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신 설>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요청하는 자
5. ~ 7. (생 략)
∥9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영상물등급위 원회 또는 관련 기관 · 단체 등 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제95조의2(벌칙) 제70조제7항에 따른 문화육관광부장관의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제9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3. (생 략) <u><신 설></u>

4. ~ 6. (생 략)

②·③ (생 략)

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과태료) ①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0조의6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
한 자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